

제23대 국교련 제1차 회장단회의 결과

- 일 시 : 2020년 5월 22일(금) 16시
- 장 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 참석자 : 공동회장단교 19/23개교, 전체교 29/41개교

연번	학교	직위	참석자
1	국교련	상임회장	오홍식
2		사무총장	김경호
3		전문위원	함주현
4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박철원
5	강원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한수
6		부회장	정미경
7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교수회	의장	김성호
8		부의장	최경옥
9	경상대학교 교수회	회장	백승철
10		부회장	윤석주
11		사무국장	이정민
12	경인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김 호
14	공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명숙
15		부회장	김한제
16		부회장	조혜영
17	공주대학교 교수회	회장	유석호
18	광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방기혁
19	군산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유경숙
20		부의장	정현채
21	금오공과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호
22		감사	박노진
23	목포대학교 교수평의회	사무처장	박시형
24			이헌종
25	목포해양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노창균
26		사무처장	장선영
27	부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두진
28		총무이사	허 균

2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의장	신윤희
30		부의장	김재수
31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조철원
32		총무이사	이영목
33		기획이사	노상호
34		대외협력이사	임정목
35	안동대학교 교수회	회장	안상준
36	인천대학교 교수회	회장	유병국
37		사무국장	이영애
38		교수평의원	이충훈
39	전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도형
40		정책연구원	정재우
41	전북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창헌
42		부회장	소은선
43	제주대학교 교수회	수석부회장	고 전
44		정책처장	제갈윤석
45		사무처장	최수석
46		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욱
47	창원대학교 교수회	사무국장	박능생
48	청주교육대학교 교수협의회	회장	한대희
49	충남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종성
50	충북대학교 교수회	부회장	류연택
51	한경대학교 교수회	회장	오호택
52		부회장	조용훈
53		부회장	김혜정
54	한국교원대학교 교수회	의장	박종률
55		사무총장	김현욱
56	한국교통대학교 교수회	회장	이철원
57		부회장	한철희
58	한국해양대학교 교수회	회장	김상구
59		부회장	이상일
60	한밭대학교 교수회	회장	임경빈
61		부회장	이봉호

62		부회장	이준우
63		사무처장	진경일
64		정책국장	김기태
65	고문 및 자문위원	고문	이형철
66	정책위원	정책위원장	송기춘
67		정책위원	박노진
68		정책위원	김대중
69		정책위원	박병욱
70		정책위원	남중웅

I. 활동보고

- 구두보고. 자료집 1~11p 참조.

활동보고 1. 공문발송 (국교련 회원교 성금모금 협조요청)

- 코로나 성금 1천만원 모금 후 기부

활동보고 2. 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사교련) 정책간담회 개최

- 김용석 이사장님 외 집행부와 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 간담회 개최

활동보고 3. 23대 국교련 공동회장교 및 감사교 선정

- 선임 현황은 4p 참조.

II. 보고사항

- 구두보고. 자료집 12~72p 참조.

보고사항 1. 예·결산 보고 및 감사보고서 보고

- 자료집 12p 참조.
- 22대 집행부에 대한 예·결산
- 신윤호 감사, 한원희 감사가 감사 진행

보고사항 2. 국교련 예산(안) 및 회비 분담액

- 자료집 24p. 참조.

보고사항 3. 정책위원회 업무 보고

- 자료집 26p 참조.
- 일반공무원 보수수당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가공무원 수당규정, 보수규정 정해져 있음. 교원의 임무와 역할이나 국가공무원의 임무와 역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에서 같이 근무하므로 국가공무원이 받을 수 없는 수당을 받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로 정책연구비가 문제되고 있음. 국가공무원 정책연구비는 국가공무원법 제48조에 명시. 정책연구도 국가공무원법상 실비변상기준에 따라서 받게 되어있음. 실비변상을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된다면은 과도한 액수를 받을 수 없음. 따라서 정책연구의 취지가 잘못되었음.
- 2020년 지침에서는 정책연구를 하더라도 본부 사항으로 하라고 지침이 내려옴. 특정 업무비용 명목으로 학생지도비를 관련이 없는 국가공무원비를 수령하는 것은 안된다는 재정지침이 내려옴.
- 국가공무원법 제48조로 정책연구 운영하는게 잘못 있음.
- 대학 회계법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임무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연구지도비가 나가는게 맞음.
- 2015년 대법원 판례가 있기 전에 일반 직원이 국가공무원법으로 연구비를 받는 것은 안된다고 판단. 국가기관에서 임무가 아닌 것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계속 있다는 것은 잘못이 있음.
- 교육연구 학생 지도라는 것이 비록 관련성이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학생과 교수 사이를 이루어지는 중간구조라는 것을 법정해 놓고 있음. 시간강사제도도 같다고 생각. 따라서 그러한 임무에 따른 재원의 집행도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대로 적용해서 재원을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맞음.
- 대학회계법까지 전체적으로 직원까지 대학회계를 수령하는 것을 법정으로 적어 놓은 것은 맞지만 적어도 고등교육법상 의무 관련성이라든지 정책연구회의 특수 과제성을 고려해 봤을 때 상식적으로 과연 국가공무원이 법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당한 것인가.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제원이 대학의 임무인 교수 연구 학생 지도를 위해 필요한 사람에게 가고 있는 것인가가 의문.
- 전체적으로 법집행과 개인적인 부분을 알고서 학내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음.

보고사항 4. 국교조 경과 보고

- 자료집 56p 참조.
- 법이 개정되기 전에 자료가 나옴. 20일에 교원노조법 제2조가 국회에서 개정됨. 대학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함.
- 국교조는 국교련 내에서 만든 발췌. 2019년 3월 29일 정책위원회를 하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교련에서 만들어냄. 국교련 전체 회장단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만들어낸 단체.
- 교원노조법 제2조 개정.
- 교수노조 현행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2018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음.

- 앞으로 단체교섭을 위한 사안들을 국교련 사무국에 연락. 취합해서 단체교섭에 반영할 것임. 각 대학교 교수님들의 의견도 반영된 사항이었으면 좋겠음.
- 합법화가 되었기 때문에 각 대학에 회장님들 중심으로 지회를 설립해주기 바람. 국교련 사무국과 국교조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도울 것임. 교수회 중심으로 조합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III. 논의사항

논의사항 1. 국립대학 교원보수체계 정상화 방안

- 자료집 73p 참조.
- 성과급연봉제로 인해 발생한 국립대 교원들의 연봉에 대한 손실분을 교육공무원법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지금까지 미지급돼온 연구수당과 교직수당 지급요구를 통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상황
- 원래는 법률이 있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규칙이 마련이 돼야 예산반영 및 지급이 가능하나 현재는 법률만 존재할 뿐 그에 대한 시행규칙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음
- 41개 대학이 합해서 내야하기 때문에 협조 부탁. 한번 제출했다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3년동안 제출 불가. 92p에 나와있는 소요재원 표 꼭 작성해서 올려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2월 말에 교육부 방문 예정이 있었지만 코로나19사태로 가지 못함. 국립대학정책부와 인사혁신처 방문 예정이 되어있음. 방문할 때 인근 대학 회장님들에게 연락드릴테니까 같이 자리해주기를 바람.
- 법률에 지급할 수 있다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논의사항 2. 국립대 총장선거권에서의 직원 등 투표 반영비율 협상

- 자료집 96p 참조.
- 직원 등의 투표비율이 높아지고 있음. 직원들이 왜 1인 1투표가 아니냐는 불만이 있음. 하지만 대학 총장선거는 위탁선거법에 의해 실시됨. 따라서 평등선거 원칙으로 얘기할 수 없음.
- 교수회에서 이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현재 교육공무원법 체계하에서는 추천위원회에서 총장 선거를 주관하게 되어있음. 따라서 협상도 추천위원회에서 마련하는 것이 당연. 형식은 추천위원회에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대표를 보내달라고 협상하는 것이 맞는 것임.
- 대체로 대학들이 직원들과 협상할 때 형식은 추천위원회에서 대학 구성원들에게 대표 보내라고 협상해야 한다고 요구.
- 시기적으로 직원 비율 점점 커짐. 여기에 문제점이 있음.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투표권 비율은 대학 민주주의 차원에서 대학에 기능하는데 얼마나 기여하느냐를 가지고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
- 정하실 때 피하셔야 할 것은 국립대에서 했던 비율을 제로베이스로 해서 거기서 올려주는 식으로 협상하므로 점점 올라감. 대학 민주주의 차원에서 대학 총장 선출은 대학

자치에서 구성원들이 기여하는 만큼씩 영향력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다른 국립대에서 정했던 비율을 참고해 올려주는 것은 지양했으면 바람.

- (요청) 교육공무원법 임용령 제9조 4를 개정을 교육부에 요구해주시기 바람.
- (요청) 대학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길 요청.

논의사항 3. 국립대학 연구 결과물 미제출 관련 연구비 제도 개선방안

- 자료집 112p 참조.
- 국정감사 때 연구 결과물 미제출시 환수율이 저조하나 환수를 획기적으로 올릴수 있는 방법 강구하라고 함. 여기에 대응한 교육부 대응 방침은 월급을 차압하겠다는 것임.
- 121p 제4조제3항 참조. 법률적으로는 협약서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결과물 미제출시 반납동의서 동의했는데 왜 안내느냐고 해도 계약서 자체가 위법성 지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야 할 이유 없음.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과 지급된 월급은 환수할 수 있지만 그 밖의 행위에 대해서는 노동행위의 대가이기 때문에 차압 불가능함.

논의사항 4. 각 대학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지급현황

- 자료집 124p 참조.
- 교수들이 노동하고 있음에도 적정하게 초과강사료를 받고 있지 못함. 따라서 자료 수집중.
- 교수님들이 현황을 정리해서 각 대학교에 공지를 하고 받지 못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한 자료이므로 협조 부탁.

논의사항 5. 기타 논의 및 자유 토론

- 공주교육대학교 한명숙

: 공주교육대학교는 지난 10월에 총선선거를 진행함. 교육부로부터 총장임명 제청을 거부한다는 공문 받음. 사유를 받지는 못함. 이 문제를 국교련이 해결해주기 바람. 앞으로 다른 대학이 이런 사태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제적 보완을 요청.

헌법 제32조제4항에 대학의 자율성은 법에 따라 보장되지만 이 상황이 헌법적 가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와 헌법에 부합하는지, 대학의 자율성과 자치를 침해하는 규정은 아닌지 검토 부탁.

(답변) 국교련에서 본인 의지에 대한 소명을 확실히 받고 성명서를 작성하고 같이 방문할 곳이 있으면 방문할 것임.

- 전남대학교 김도형

: 지난 3년간과 같은 사항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음. 국교련 차원에서 국회의원 자문 위원단으로 조직을 만들면 어떨까 제안.

<회의사진>



